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바랍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종전과 같음	-
실내·외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종전과 같음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운영제한시간 해제	▲ 운영제한 시간 해제	3-4단계 동일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 종전과 동일	▲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 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펍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업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이·미용업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②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③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④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3단계)사적모임 11명(접종완료자 포함)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4단계)사적모임 9명(접종완료자 포함)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 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과 '추가적용 수칙' 적용

■ (시험 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⑤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⑥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⑦ 학교(등교)

○ 3단계/4단계: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3.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4.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 협·단체

주무관 유재훈 과장 전결 2021. 10. 19. 김재준

협조자

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1203 (2021. 10. 19.)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일자리혁신과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222 팩스번호 044-203-4722 / jaehun9110@oma.go.kr / www.motie.go.kr / 대국민공개